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 10. 16.(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내용
 - 학생 마약 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운영 및 수반되는 사무 위탁
-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 2, 제15조의 2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7조(위탁)
 -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체결

○ 필요성

- 교육청-지역사회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마약예방교육 실효성 증대
- 학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약 인식 제고

○ 민간위탁 사업 개요

(단위: 천원)

기관명	사무명	사업대상	수탁자 선정 방식	위탁기간	사업비
충청북도 교육청	2024.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사업	충청북도 초·중·고 ·특수학생	수의계약	'24.1.~12.(12개월)	30,000

○ 위탁 비용 산출내역

- 산출내역: 100,000원×300회(학생 마약 예방교육 강사비)

○ 위탁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4호 자목에 의한 수의 계약

※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2024.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하려는 ‘2024.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무내용은 학생 마약 예방교육 강의 지원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에 따른 전문강사 및 학교 매칭 관리·운영, 강사 지원 사업의 행정·회계 업무 및 운영·관리임

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3항¹⁾,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 「민간위탁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²⁾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이하 “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라 한다) 제7조제1항³⁾에 따르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

1)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제7조(위탁)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4조1) 및 제6조제1항2)에서 교육감이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됨
- 충청북도 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내부의 민간위탁적정성 검토 결과 (상세내용: 별첨) 적합함의 의견에 따라 본 동의안은 학생 대상 마약 예방교육에 있어 특수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점,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에서 마약을 포함한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고, 「법」과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10대 마약사범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증가되고 SNS·가상화폐,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마약류 거

1)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
5.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래가 이뤄지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학교 내 마약 예방교육의 강화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을 마약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예방교육 실시가 300회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대책과 민간위탁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퍼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¹⁾ 및 「민간위탁 조례」 제6조²⁾에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 1)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5.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 이며,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2023.9.15. 교육위원회 주관한 <충북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제기된 마약교육강화와 관련하여 도내 마약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탁하는 것이 필요함.

* <별첨>

○ 충청북도 교육청 체육교육과 내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단계	판단기준	분석 결과	검토 결과
1	◇교육감 소관 사무 -교육감의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인가?	○교육감 사무 ⇒ 민간위탁 검토 ○민간활동지원사업 ⇒ 보조사업	교육감사무임
2	◇비권리성·의무성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함	○시민의 권리·의무와 무관 ⇒ 민간위탁 검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 직영	시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함
3	◇공공성·공익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공재 공급 ⇒ 민간위탁 검토 ○사적재 공급 ⇒ 사용수익허가	공공재 공급임
4	◇전문성·지속적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 인 사무인가?	○전문성·지속성 ⇒ 민간위탁 검토	전문성·지속적임
5	◇전체적 사무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인가? 부수적 사무인가?	○전체적 ⇒ 민간위탁 검토 ○부수적·일부 ⇒ 용역	전체적 사무임
6	◇책임성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행정/공공 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가?	○수탁기관에 귀속 ⇒ 민간위탁 검토 ○행정기관에 귀속 ⇒ 관리대행	수탁기관에 귀속됨
7	◇경쟁가능성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 원리가 적용 가능한가(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인가)?	○경쟁원리 적용 ⇒ 민간위탁 검토 ○경쟁원리 불가 ⇒ 공공위탁 (법정위탁, 지정, 고시위탁)	경쟁원리 적용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익적 목적과 안정성을 가진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임

3) 경제적 효율성

→정부가 수행하는 경우보다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비용·효율성이 있는 사무임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지식 활용 가능성이 높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실적을 토대로 업무성과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한 사무임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인이 용이한 사업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음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임